

##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8520
----------	-------

제안연월일 : 2026. 4. .

제안자 : 외교통일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1건의 법률안을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건명	의안번호	발의자	발의일	상정일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6961	김영배의원 등 12인	2026. 2. 23.	2026. 3. 6.

나. 김건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7326호)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2026.3.9.).

다.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6. 4. 9.)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라.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2026. 4. 15.)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재외동포청으로 흡수·통합하여 재외동포 업무 수행체계를 정부조직으로 일원화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시행계획에 따른 자체평가 관련 절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한 자체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외동포청장이 종합하여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
- 나. 재외동포 업무 수행체계를 정부조직으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재외동포협력센터의 근거조항을 삭제함(안 제11조 삭제).
- 다. 재외동포협력센터의 해산에 따른 권리·의무 및 재산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마련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 실시의 근거를 규정함(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을 “자체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재외동포청장은 그 결과를 종합하여”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외동포협력센터의 해산에 따른 경과조치) ① 재외동포협력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센터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은 재외동포청이 승계한다. 이 경우 재외동포청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승계되는 날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센터가 행한 행위 또는 센터에 대한 행위는 그

업무의 범위에서 재외동포청이 한 행위 또는 재외동포청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재외동포업무의 흡수·통합에 따른 시험 실시)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 지원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이라도 재외동포청으로 흡수·통합되는 사무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재외동포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시행계획 등의 수립 및 평가) ① · ② (생략)</p> <p>③ 재외동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하여 <u>자체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10조에 따른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p> <p>④ (생략)</p> <p>제11조(재외동포협력센터의 설립 등) ① <u>국가는 재외동포의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및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재외동포협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u></p> <p>② <u>센터는 법인으로 한다.</u></p> <p>③ <u>센터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u></p>	<p>제8조(시행계획 등의 수립 및 평가)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u>자체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재외동포청장은 그 결과를 종합하여</u>----- ----- -.</p> <p>④ (현행과 같음)</p> <p><u>&lt;삭 제&gt;</u></p>

1.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초청·연수·교육·문화·홍  
보 사업

2. 재외동포 이주 역사에 대한  
조사·전시 사업

3.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  
부터 위탁받은 사업

4. 그 밖에 설립목적을 달성하  
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센터장과 필요한 임직  
원을 둔다.

⑤ 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 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  
터의 설립, 사업과 운영에 필요  
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⑦ 센터는 필요하다고 인정하  
면 재외동포청장의 승인을 받  
아 관계 법령에 따라 기부금품  
을 모집·접수하여 사용할 수  
있다.